

간주이자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 대 규*

【목 차】

I. 문제의 제기

II. 간주이자 규정의 문제점

1. 현행 이자간주 규정의 문제점
2. 간주이자의 입법 취지

III. 이자율 산정방식 비교

1. 서설
2. 일본의 간주이자규제
3. 싱가포르의 간주이자규제

IV. 맺음말

【국 문 요 약】

간주이자'란 고유한 의미의 이자가 아닌데 법률상 '이자로 간주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감정평가 등 거래체결 비용부터 중도해지 수수료 등이 그렇다. 그러나 대부업법은 간주이자의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자제한법은 성질상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제한하지만 명료하지 않다. 무한 확장할 수 있는 '간주이자'는 법률상 최고이자율을 왜곡하는 '부(負)의 효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간주이자 규정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차이에 비롯한 '특례금리효과'를 전제한다. 왜냐하면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간주이자 규제에 늘어나는 거래비용을 특례금리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8년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같아졌다. 그런데도 간주이자 규제는

*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Dr. iur.)

그대로 남아 사실상 최고이자율 일원화를 왜곡하며 ‘부(負)의 효과’를 강화한다. 나아가 물가와 시장금리가 동시에 상승하는 시기에는 거래비용과 제반 수수료가 이자율 산정을 위한 이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간주이자 총액 비중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최고이자율 규제하에서 간주이자 규제는 비용을 견디지 못한 사업자가 제도권 시장에서 철수하고 이용자는 사금융시장에 의존하는 규제의 역설을 발생시키는 제도적 요인으로 기능한다. 이는 ‘사금융 양성화’라는 대부업법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주이자의 문제점을 살피고 우리 법제와 비교할 수 있는 일본이나 싱가포르에서 이자로 간주하는 범주와 비교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 문제의 제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¹⁾의 제정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법령에서 드러나듯이 ‘사금융 양성화’와 ‘금융이용자 보호’였다. 두 목적은 병렬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적 인과 관계를 이룬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금융이용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부업법’의 핵심 목적은 ‘사금융 양성화’라고 할 수 있다.

‘대부업법’ 시행 10년을 지나면서 ‘사금융 양성화’는 일정하게 실현했다는 평가가 있었다.²⁾ 무엇보다 대부업법 시행 이후 대부업체 등의 등록이 급증하면서 사금융 시장 규모가 비례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대부업 등록이 급증한 원인은 무엇보다 등록에 따른 ‘특례금리효과’의 발생을 들 수 있다. ‘특례금리’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간의 차이를 말한다. 사금융업자가 대부업 등록을 하면 당국의 감독·관리를 받는 대신 특례금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³⁾ 특례금리 폭이 넓을수록 대부업 등록의 경제적 유인이 크다.⁴⁾

그런데 2018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⁵⁾으로 대부업 등록의 경제적 유

1) [시행 2002. 10. 27.] [법률 제6706호, 2002. 8. 26, 제정]

2) 대부업법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연리 46%가 인하됐다. 제정 이래 17년 동안 법률은 26회, 시행령은 32회 개정됐다.

3) 일본에서도 2006년까지는 「出資의 受入·預金 및 金利 等の 取締에 관한 法律」(1984.6.23. 법률 제195호, 「출자법(出資法)」 이식제한법보다 높은 별도의 최고이자율을 설정하여 대금업자가 특례금리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 최고이자율 일원화로 이식제한법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되었다(제5조).

4)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진입장벽 강화(자기자본·고정사업장 요건)와 2018년까지 이루어진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업체 수 및 거래자 수도 2016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시장은 대부 잔액 100억 원 이상의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되어 왔다. 최고금리가 연 66%였던 2007년 9월 말 18,197개 사에 이르던 대부업체 수는 2010년 12월 14,014개 사, 2016년 6월 말 8,980개 사, 2017년 6월 8,075개 사로 감소하였다. 대신 대형 법인 대부업체가 915개 증가하였다. 시장이 대형 법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점은 대부업 진입장벽 및 최고이자율 인하로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하는 개인 사업자와 소형 법인 사업체가 시장에서 먼저 도태중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인이 사라졌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일원화’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看做利子)’ 관련 규정은 그대로 남아 ‘최고이자율’을 왜곡한다.

‘간주이자’란 고유한 의미의 이자가 아닌데 법상 ‘이자로 간주하는 것’을 가리킨다.⁶⁾ 현행법상 간주이자 규정은 ‘실질적인 의미’의 이자만이 아니라 거래체결 비용부터 연체이자, 중도해지 수수료까지 이자 범주를 확장한다. 결과적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거래비용과 제반 수수료가 이자율 산정을 위한 이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간주이자 총액의 비중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간주이자’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왜곡하는 ‘부(負)의 효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간주이자 규정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차이에서 비롯한 ‘특례금리효과’를 전제한다. 왜냐하면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간주이자 규제에 늘어나는 거래비용을 특례금리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례금리’는 사금융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유인할 뿐 아니라 간주이자로 인한 사업자의 비용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이중 기능을 했다.

하지만 대부업법은 간주이자의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서 적용 예외로 명시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자제한법은 성질상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해석의 여지를 두었지만 명료하지 않다. 무한 확장할 수 있는 ‘간주이자’는 법률상 최고이자율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기반의 새로운 금융영업의 출현을 저해한다.

또한 간주이자가 초래하는 ‘부(負)의 효과’가 경기가 침체하는 시기에 감독 당국의 영업행위규제 강화와 결합하면 제도권 등록 대부 시장의 안정성에 변동을 초래할 ‘비등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⁷⁾ 대부 공

5) 개정 시행령 2018년 2월 8일 시행

6) 대부업법 제8조 제2항과 제15조 제2항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7) (사)서민금융연구원이 2019년 2월에 발표한 ‘대부업·사금융 시장 이용자 및 업계 동향 조사 분석’에 따르면,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일원화 이후에 대부업체 대출을 거절당한 이용자 약 45~65만 명이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했고 그 규모가 약 5조 7천억 원~7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급시장에서 대형 금융회사는 위험한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에 주력할 것이고,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던 중소형 사업자는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제도권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⁸⁾ 달리 말하면, 제도권 대부 공급시장이 축소되면서 불법 사금융시장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⁹⁾ 이는 ‘사금융 양성화’라는 대부업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 특례금리가 사라지고 난 뒤에 간주이자로 인해 발생하는 금리역차별로 인해 사금융이 조장되는 ‘규제의 역설’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산정(算定) 실무에서 간주이자 규정이 초래하는 ‘부(負)의 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2장에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규정이 내포한 여러 문제점을 먼저 살펴겠다. 특히 두 법률의 최고이자율 규제의 일원화라는 개정 취지와 달리 이를 사실상 왜곡하는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아울러 현행 간주이자 규제 취지와 법제사적 기원도 함께 살펴겠다. 그 목적은 입법 당시에 간주이자 규정이 전제한 경제적

8) 21대 국회 정부위원회 이용우 위원(민주당)은 법정 최고이자율이 대부 원가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중략)…사실 16년 3월에 28%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국내에서 제일 큰 시티파이낸셜이 대부업을 중단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아까 손익을 안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일본계 대부업체가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5~6% 싼 거예요. 그래서 여력이 약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논리로 따지기 시작하면 과연 이렇게 낮춰 줬을 때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대책이……정부가 정책 금융회사한테 정책금융 규모를 얼마를 할지 그 비용구조하고 같이 봐줘야 하는데 그것 없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예요.” 21대 국회 회의록, 제386회(임시회) 정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1.4.26.)

9) 이수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대부업체 이용자 및 재무적 정보를 이용하여 그동안의 최고금리 인하가 이용자와 대부업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실증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도권 등록 대부 시장 규모는 2016년 3월의 금리인하 이전까지는 계속 증가했지만, 그 후로는 정체되었다. 또한 신용이 낮은 이용자가 저신용자로 대체되었으며, 전체 이용자 중 저신용자의 비중이 지속해서 감소했다. 이를 미루어보면 2016년 3월 이후의 추가적 금리인하는 이용자 보호라는 대부업법의 입법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수진은 2016년 3월 이후 적용된 법정 최고금리(연 27.9%)가 연 25% 혹은 연 20%로 인하될 때 합법적인 대부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저신용자의 규모를 여러 시나리오 하에서 추정하였다. 만약 최고금리가 연 25%로 인하되면 현재 대부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 중 최소 11%가, 연 20%로 인하되면 최소 76%가 합법적인 대출상품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수진,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8.

법리적 환경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제3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고이자율 규제 및 간주이자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일본의 「출자(出資)의 수입(收入), 예금 및 금리의 수취에 관한 법률」¹⁰⁾, 「이식제한법(利息制限法)」에서도 이자 간주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살펴보겠다. 아울러 우리 대부업법과 비교할 수 있는 싱가포르 대금업법(Moneylender Act)의 최고이자율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겠다. 이를 바탕으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규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겠다. 마지막에는 이자율 규제에 대한 여러 법적 장치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나 경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하는 시장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명목상 ‘법정 최고이자율’만을 일원화하는 것이 왜 취지와 달리 실무상 역작용을 가져오며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글을 맺는다.

II. 간주이자 규제의 문제점

1. 현행 이자 간주 규정의 문제점

가) 개념상 문제점

우리 민법에서는 ‘이자(利子)’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 대신 ‘이자’를 민법 제10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인 법정과실(法定果實)의 대표적 사례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법률상 ‘이자’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소비하는 대가로서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라고 할 수 있다.¹¹⁾

10) 일본에서도 모든 금전대차 거래를 형사적으로 규제하는 「출자법(出資法)」은 2006년 이전에 이식제한법보다 높은 최고이자율을 설정하였다. 이를 회색 구간(Gray Zone)이라 불렀으며 대금업자에게 특례금리 효과를 발생시켰다.

11) 김상용, 「채권총론」(화산미디어, 2009), 58면; 김준호, 「채권법」(법문사, 2016), 35면; 김형배·김규완·김명숙, 「민법학강의」(신조사, 2013), 904면; 노종천, 「채권총론」, (동방문화

법률상 이자 개념에서 도출할 수 있는 첫 번째 특성은 이자가 ‘원본의 사용대가’라는 점이다. 아울러 이자는 사용기간과 비례하며 ‘사용 대가’ 제공이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법률상 이자의 개념적 특징은 ① ‘이자가 원본 사용 대가’라는 점과 ② 그 대가는 수익 여부와 무관하며, ③ 사용기간에 비례한다는 점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은 원본 사용의 대가가 아니다. 실무상 ‘연체이자’ 또는 ‘지연이자’라고 불리지만 성질상 ‘손해배상금’이다.¹²⁾ 대법원 판례도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¹³⁾ 이 밖에 대법원은 “금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지연손해금’이 이자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¹⁴⁾

하지만 대부업법 제8조 제2항과 제15조 제2항에서는 ‘연체이자’도 이자로 간주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업법 제8조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채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정하여 이자의 범주를 개념

사, 2017). 41면; 백경일, 「채권총론」, (고래시대, 2015), 195면; 송덕수, 「채권법총론」, (박영사, 2015), 84면; 이덕환, 「채권총론」, (울곡미디어, 2014), 57면; 조승현·고영남,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문화원, 2014) 105면.

12) 김상용, 위의 책, 59면; 김준호, 위의 책, 법문사, 35면; 김형배·김규완·김명숙, 위의 책, 904면; 노종천, 위의 책, 41면; 백경일, 위의 책, 506면; 송덕수, 위의 책, 84면; 이덕환, 위의 책, 58면; 조승현·고영남, 위의 책, 106면; 제철웅, “지연이자 및 부당이득으로서의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청구권, 「비교사법」 제32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225~227면.

13) 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214 판결,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 57800 판결;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42141판결.

14)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적 특성과 무관하게 끝없이 확장한다. 특히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라는 법문(法文)은 지극히 포괄적이다. 대관절 어디까지 이자로 간주할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에 ‘과잉금지 원칙’을 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과 상치한다.

이에 반해 2011년에 신설된 이자제한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채무자의 금전지급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 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이면 이자로 봐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에 따르면 이자제한법은 거래체결에 따른 모든 비용과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이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다. 채무자의 금전지급의무가 거래의 구체적 조건과 일반원칙에 비추어서 본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지를 가려서 이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간주이자의 범위에 관하여 일정한 해석기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과연 어떤 것이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인지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과 시행령에서도 명료하지 않다.

나) 실무상 문제점

간주이자(看做利子)란 고유한 의미의 이자가 아니지만 ‘이자로 간주하는 것’을 가리킨다. 어디까지 이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과 제15조 제2항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정한다.¹⁵⁾ 이밖에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¹⁶⁾도 간주이자 사례로 ‘연체이자’를 추가할 뿐, 법령과 함께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모든 것”을 이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경기변동과 거래 환경 변화에 따라 늘 새로운 유형의 대출 방식이 출현하여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과연 간주이자를 어디까지

15)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자제한법 제4조 2항은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 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간주이자 확장의 여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6) 금융위원회,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2019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 혼란은 필연적이다. 예컨대 ‘트랜잭션 बैं킹(Transaction Banking)’¹⁷⁾처럼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은행의 영업방식을 도입하는 일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중 은행이 외부 사업자 제휴를 통해 ‘트랜잭션 बैं킹’ 업무를 본격화했다. 이를 위해 은행은 무역 거래를 돕는 수출입금융을 중심으로 기업을 위한 ‘자금관리서비스시스템’(Cash Management Service; CMS)을 구축하여 영업한다.¹⁸⁾ 기업은 ‘CMS’를 통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계좌 정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킨 다음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유동성 관리를 할 수 있기에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재무 정보 신뢰도가 낮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트랜잭션 बैं킹을 적극 활용하여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반면에 여신기관은 대금의 지급 및 수납, 장·단기 현금흐름 예측을 통해 자금 조달 및 투자정책을 수립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장점이 많은 트랜잭션 बैं킹이 은행의 안정적 수익모델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기능개선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부업법이 수수료 등 부대비용 일체를 이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P2P대출 지침」에서 플랫폼 매칭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하는 것처럼 고객과 대출 약정(Commitment Loan)을 체결하고 고객 자금 사정에 따라 며칠 짜리 초단기 대출을 일정 기간 수시로 실행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영업모델도 대부업법상 ‘간주이자’ 규정과 이자율 단리환산(單利換算)에 관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대부업법상 간주이자 규정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P2P대출’이나 ‘트랜잭션 बैं킹(Transaction Banking)’처럼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영업방식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에는 감독 실무상 일정한 제약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¹⁹⁾

17) ‘Transaction Banking’이란 은행이 기업 고객들에게 ‘자금관리서비스(CMS)’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 신탁, 사무수탁, 무역금융 등 수수료를 창출하는 모든 영업을 가리킨다. 이자수익보다 높은 수수료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분야다. 자기자본 소요량과 위험성이 낮고 수익성은 높은 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구와 일본 금융회사가 적극적이다. 서정호, “트랜잭션 बैं킹의 현황과 확대방안”, 「주간 금융브리프」 제19권 49호(금융연구원, 2010), 8면.

18) 서정호, 위의 글, 9면.

이를 예방하려면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간주이자 범위를 제한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특정용자계약(Commitment Loan)에 관련된 수수료에 대해서 대금업법상 간주이자의 예외를 인정하는 일본의 「特定融資契約에 關한 法律」²⁰⁾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법 흠결을 보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간주이자 예외 규정의 문제점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단서는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서 예외로 정하는 것으로는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 두 가지뿐이다. 달리 말하면,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이자율 산정을 할 때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과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을 이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소관 법령에 대한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통령령에서 예외로 정한 담보권 설정비용도 일부만을 예외로 인정한다. 금융위원회는 담보권 설정비용을 ‘직접필요비용’과 ‘간접필요비용’으로 구분하여 ‘간접필요비용’을 이자로 간주한다.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에 따르면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직접필요비용’이란 예컨대 저당권,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양도담보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직접 비용’을 가리킨다. 반면에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간접필요비용’이란 편리한 담보권 설정 및 채무집행을 목적으로 지불되는 감정 및 공증 비용, 변호사·법무사 비용 등도 대부업자가 수취했다면 이자로 간주한다.²¹⁾

달리 말하면 담보대출이 채무자를 위한 것이고,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가 어느 정도 가치를 갖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감정비용을 채권자 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19) 머니투데이(2018.03.16.), “수수료도 이자일까? ...오락가락하는 '이자'의 정체”.

20) 特定融資枠契約に關する法律(平成 11年 法律 第4号).

21) 질의회신사례 : 금융위원회,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2019.03, 77면

원칙'에 반한다.

또한 '과잉대부'를 금지하고 있는 대부업법 제7조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재력·신용·부채상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하여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잉대부금지의 원칙'은 신용대출뿐 아니라 담보대출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담보물에 대한 과대평가는 변제능력을 웃도는 과잉 대부를 초래할 수 있고, 대부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오로지 대부자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소비대차 거래를 하는 여신전문 사업자에게 담보설정이나 공증사무는 반복적인 일이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특화된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대출 건수에 반비례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대출비용 절약은 대출거래의 당사자 쌍방에 이로운 일이다. 그런데 담보설정 비용 등을 간접필요비용으로 구분하여 일괄적으로 이자로 간주하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은 비용 절약으로 인한 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결국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에 따르면 대통령령에서 예외로 정한 '담보권 설정비용'조차 지방교육세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아니라면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법령을 해석하는 정부행정기관이 내린 유권해석은 법률상 구속력은 없지만 실무상 '관철력'²²⁾이 있다. 따라서 감독 당국의 유권해석도 이자의 개념적 특성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대부업법상 '단리환산(單利換算)' 규제의 문제점

간주이자 규정과 함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간의 최고이자율 일원화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단리환산(單利換算)²³⁾ 규정을 들 수 있다. 대부업자는 변제기 이전에 단 1회라도 월(月)

22) 실무상 '관철력'이란 감독 집행과정에서 관철될 높은 가능성을 말한다. 그렇지만 유권해석의 '관철력'은 일종의 가능성이므로 국가기관이 기왕의 유권해석을 재량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단위 또는 일(日) 단위로 이자를 수수한다면 무조건 단리로 환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설령 수령 이자 총액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형사 처분을 받아야 한다.²⁴⁾

달리 말하면 대부업법은 수범자에게 연 20%라는 법정 상한을 부과함과 동시에 초단기 일수 대출이나 월 단위 단기 신용대출의 만기 전 중간 이자 지급에 대하여 이중의 법정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일수(日收) 대부는 일(日) 0.0555%, 월수(月收) 대부는 월(月) 1.665% 등을 초과하면 안 된다. 만약 사업자가 단리 환산 규정을 단 1회라도 위반하면 수령 이자 총액이 연리 20%를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형사 처분받아야 한다.²⁵⁾ 이 조항은 사실상 여신사업자 및 등록 대부업자에게 사실상 일수(日收)나 월수(月收) 대출과 같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단 한 차례 실수해도 등록이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제한법」에는 ‘단리환산(單利換算)’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규제 수준의 일원화를 논하려면 연리(年利)와 단리(單利) 상한이 중층적으로 존재하는 대부업법의 조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업법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사법 위험을 수범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2. 간주이자의 입법 취지

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의 입법 취지

대부업법은 왜 이와 같은 포괄적인 간주이자 규정을 두었을까?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 규정 취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²⁶⁾ 단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23) 일수(日收) 대출의 경우처럼 월(月) 또는 일(日) 기준으로 이자를 수수할 때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2항에 따라서 연 100분 20과 같은 연리(年利)를 적용하기 위해서 동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월(月) 또는 일(日) 단위 기준 단리(單利)로 환산해야 한다.

24) 법제처 법령해석 06-0017(2016.3.24.), 대부업정책협의회(2018)

25) 법제처 법령해석 06-0017(2016.3.24.), 대부업정책협의회(2018)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하여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 3천만 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대부 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率)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법 제8조)”이라고 하여 동법 제8조 1항의 이자율 상한에 관한 골자만을 밝히고 있다.

이와 달리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간주이자’ 규제의 취지를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대부업법 위반 및 위반 방조 사건’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에게서 돈을 징수하여 위법을 잠탈(潛脫)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라고 한다.²⁷⁾ 물론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관한 설시(說示) 근거는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판례가 밝힌 취지는 2007년에 제정된 새 「이자제한법」 제4조 간주이자의 입법 취지와 유사하다. 「이자제한법」 제정이유²⁸⁾는 “이자의 최고한도를 면탈하려는 탈법행위 방지”를 입법 취지로 설명한다. 차이점은 「이자제한법」의 제정이유에 나오는 ‘면탈(免脫)’ 대신에 대법원 판결문에는 ‘잠탈(潛脫)’이라는 말이 쓰였다. ‘면탈’은 “죄나 책임에서 벗어남”을, ‘잠탈’은 사전적으로 “규제나 제도 따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²⁹⁾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범자의 ‘잠탈 행위’는 「이자제한법」상 ‘면탈 행위’보다 훨씬 능동적이다.

26)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 법률(법률 제6706호, 2002. 8. 26. 제정, 시행 2002. 10. 27.), 제정·개정문.

27)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28)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이자제한법(법률 제8322호, 2007. 3. 29. 제정, 시행 2007. 6. 30.), [제정·개정문] 나. 간주이자(법 제4조) : 이자의 최고한도를 면탈하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할인금·수수료·공제금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받은 것은 이자로 보도록 함.

29) 우리말샘, ‘잠탈’ 예문(대한변협신문 2015.07) “대법원은 경찰 피신 조서에 관한 내용 부인 제도의 ‘잠탈’을 막기 위해 피의자 진술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조사 경찰관 또는 일반인의 증언 등에 대해서도 내용 부인 규정을 확대 적용하였던 것이다.”

나) 일본 이식제한법상 간주이자의 입법 취지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사용된 ‘잠탈(潛脫)’은 일본 「이식제한법」상 간주이자 규정(제3조)의 입법 취지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1957년의 이식제한법 입안 관계자는 ‘간주이자’ 규정의 취지를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의 ‘잠탈방지’로 설명한다.³⁰⁾

“채권자는 때때로 원리금의 변제를 받는 것 외에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조사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원본 사용의 대가, 즉 이식(利息)의 실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명칭으로 이식의 제한을 잠탈(潛脫)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이자로 간주했다. 무엇보다 계약의 체결 및 채무 변제의 비용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원본 사용의 대가는 아니므로 이를 이식(利息)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간주이자 규정을 둔 취지는 이식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사례금 등을 징수하여 「이식제한법」상 이식 제한 규정의 ‘잠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계약의 체결 및 채무 변제의 비용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원본 사용의 대가가 아니므로 이를 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여 예외 기준을 ‘비용의 실질’에 두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담보권 설정비용’조차 지방교육세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아니라면 모두 이자로 간주하는 우리나라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보다 논리적 이해가 가능하다. 일본 「이식제한법」처럼 간주이자 규정의 적용 예외를 ‘비용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과 달리 계약서 작성비나 감정·공증·변호사·법무사 비용이나 ‘채무변제’와 관련한 담보설정 비용도 간주이자 규정의 적용 예외로 보아야 할 것이다.

30) 吉田 昂(1954), 「利息制限法解説」, 『法曹時報』 6卷 6号, 678面; .金融取引の多様化を巡る法律問題研究会(2017), “金融取引の適用範囲のあり方”, 『金融研究』, 日本銀行金融研究所, 7面에서 재인용.

다) 간주이자의 법제사적 검토

우리나라에서 이자에 관한 최초의 단행법으로는 1906년 9월 28일에 법률 제5호로 반포된 대한제국의 ‘이식규례(利息規例)’가 있다. ‘이식규례’는 국전(國典)³¹⁾상의 이자 규정을 승계하는 한편 전통적 일본일리(一本一利)³²⁾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다.³³⁾ 또한 이식규례는 제1조에서 당사자끼리 약정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10분의 4로 제한하였으며, 이자에 관한 특약이 없을 때는 최고이자율을 10분의 2로 하였다. 요컨대 대한제국의 이식규례(利息規例)에는 최고이자율을 정하면서 이자의 총량 억제에 중점을 두었을 뿐 ‘간주이자’ 규정을 두지 않았다.³⁴⁾

하지만 1911년에 총독부령으로 이식규례를 대체한 ‘이식제한령(利息制限令)³⁵⁾’에서는 전통적인 일본일리 원칙을 볼 수 없는 대신, 조선에 생소한 ‘간주이자’ 규정이 도입되었다.³⁶⁾

이식제한령은 메이지 유신 후 태정관찰(太政官札)³⁷⁾과 같은 불환지폐

- 31) 이식규례(1906)가 반포되기 전의 조선에서 소비대차 및 이자를 규율하던 법은 『대명률(大明律)』과 『대전회통(大典會通)』이었다.
- 32) 돈을 빌리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이자가 원금을 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이자 총량을 규제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어긴 경우 『대명률(大明律)』에 따라 처벌하였다.
- 33) 과거에는 실무상 1년간의 이자만 받도록 하거나 일본일리(一本一利)를 받도록 하던 상황이 공존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식규례’는 제3조에서 이자의 총액이 원본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여 이른바 ‘일본일리’를 명문화하였다. 하지만, “구한말 이자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22권 3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1254~5면.
- 34) 앞서 청나라 화폐 금수조치(淸錢禁輸措置)를 단행했던 조선은 1876년에 체결한 조일수호조규 제7조에서 금 태환이 불가능한 일본의 불환지폐(不換紙幣)를 조선에서 통용하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 메이지 정부는 통화발행권을 조선까지 확대하여 화폐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었다.
- 35) 서기(西紀) 1911년 제령 제13호 「이식제한령(利息制限令)」
- 36)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이전의 조선에서 빚쟁이에 대한 사례금이나 수수료를 수수하던 관행에 대한 보고나 이에 관한 규제 사례를 볼 수 없다.
- 37) 태정관찰(太政官札, だじょうかんさつ)은 메이지 신정부의 수반인 태정관(太政官, だじょうかん)이 1866년에 발행한 지폐다. 메이지 신정부는 막부정치 복원을 바라는 세력과 별인 보신전쟁(戊辰戰爭)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했으며 내전으로 위축된 농업 생산력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태정관찰(太政官札)을 대량으로 발행했다. 태정관찰(太政官札)은 금태환(金兌換)을 전제했기에 금찰(金札)이라고도 불렸다. 그러나 정화(正貨)인

(不換紙幣)가 대량 유통되어 물가가 폭등하던 1877년(明治 10年)에 제정된 일본의 이식제한법을 조선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1877년 메이지 시대의 이식제한법상 간주이자가 2002년에 제정한 대부업법과 2007년 이자제한법에 여과 없이 부활했다.

문제는 일본에서 간주이자 규제 수준에 관해 일정한 변화가 있었으나 우리는 이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이식제한법은 경제환경의 변동을 고려하여 판례와 해석을 통해 ‘비용의 실질’이라는 간주이자에 관한 적용 예외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출자법은 1983년 개정으로 이식제한법과의 규제 차이를 없앴다.

Ⅲ. 이자율 산정방식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 서설

외국의 최고이자율 규제 실태를 검토한 선행연구는 상당수 있다.³⁸⁾ 하지만 대체로 명목상 최고이자율만을 살펴보고 우리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과 단순 비교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단기대출의 경우 명목상 최고

금 비축량이 부족하여 사실상 불환(不換)지폐였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발행량과 유통량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지폐의 시장가는 액면가보다 낮았다. 또한 태정관찰의 유통은 상업이 발달한 대도시에 국한되었다. 발행 당시의 액면가는 10兩(표), 5兩, 1兩, 1分(부), 1朱(슈)로 총 5종이었다.

38) 2005년도 이후의 대표적 선행연구로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정찬우·이건범·강경훈(2005), 「대부업 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한국산업개발연구원·한국질서경제학회(2005), 「소비자금융 민간백서」,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최인방, “대부업의 최근 동향과 향후 과제”, 한국은행, 2006; 김대정(2007), “현행법상 이자제한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9권 제2호, 중앙법학회; 이은희, “영국 소비자신용법상 부당한 신용거래의 규제”, 『법제(2007.03)』,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2008), “서민금융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32호), 김대규(2008), 대부업자의 상한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제15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김대규(2008), 미국의 단기소액대부에 대한 규제와 한계-페이데이론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7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김대규(2016), 금리상한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대부금융협회; 김대규(2019),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교법적 관점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체결 비용을 비롯해 지연이자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보증보험료 등을 이자 총액에 산입하는 방법 등에 대한 비교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 수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상당수 제출된 20대 국회에서도 선진국 규제 사례가 제시됐다. 하지만 「대부업법」 개정안에 소개된 나라 중 우리나라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의 간주이자 규정과 비교할 수 있는 입법을 가진 나라는 일본과 2016년 12월에 제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³⁹⁾에 제시된 싱가포르 정도다. 다음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를 검토하겠다.

2. 일본의 간주이자 규제

가) 출자법과 이식제한법의 기준

일본의 대금업 관련 규제는 「대금업법(貸金業法)」, 「출자법(出資法)」⁴⁰⁾, 「이식제한법(利息制限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입법 목적에 따라 「대금업법」은 등록·영업행위 등 대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을 주로 규율하지만 「출자법」과 「이식제한법」은 금융거래상 최고이자율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전당포영업법」은 「출자법」과 「이식제한법」과 다른 월(月) 9%의 금리상한을 두고 있다.⁴¹⁾

-
- 39) 「대부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제윤경 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제2004102호), 2016.12.5.
 40) 일본에서도 2006년 이전 「출자법(出資法)」은 이식제한법보다 높은 별도의 최고이자율을 설정하여 위반자에게 형벌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회색 구간(gray zone)은 사실상 대금업자에게 특례금리 효과를 누리게 한다.
 41) 다만, 전당포업자 최고이자율의 민사적 효력에 대해서는 일본 판례가 아직 통일된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거래는 이식제한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 이자계약(金銭消費貸借利息契約)」이므로 전당포 영업에도 “이식제한법”이 적용되어 초과 이자에 대해서는 상환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大阪地裁 平成 15年(2003年) 11月 27日 判決). 하지만 일본 전당포영업법은 이식제한법과 달리 월(月) 30일(日)을 하나의 변제기로 정하여 월 9%(엄밀히는 1일당 0.3%)의 최고이자율을 정한다(質屋営業法 第36条). 이를 연리(年利)로 환산하면 연 108% 정도 이상의

현행 일본의 「이식제한법」은 1954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형식과 주요 내용은 1877년(明治 10年)에 제정된 「이식제한법」과 유사하다. 간주이자 규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이식제한법」과 달리 1954년에 제정된 「출자법」에는 우리 대부업법과 같이 ‘간주이자’의 적용 예외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다. 그 결과 「출자법」상 계약체결 비용 등의 이자총액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헌법」 제31조 ‘적정 절차 위반’의 소지가 있었다.

실제로 1983년 「출자법」 개정 한 해 전인 1982년의 최고재판소 결정에서는 ‘간주이자’의 예외를 해석상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⁴²⁾ 결국 최고재판소는 「출자법」에서 「이식제한법」과 달리 간주이자의 예외를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체결 및 채무 변제 비용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이 명확하다”라고 설시(說示)하면서 동 법률을 합헌(合憲)으로 판단했다.

최고재판소 조사관의 판결 해설에 따르면 “동 결정은 비용을 명목으로 법률상 제한을 잠탈(潛脫)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했다고 한다. 아울러 「출자법」에서 정한 이자 상한이 “하루에 0.3%⁴³⁾라는 것은 고이율이므로 계약체결 및 채무 변제 비용을 상쇄하고 남는다. 따라서 비용의 실질을 가졌지만, 간주이자에 포함해도 그다지 불합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탈법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를 관철하여 우선했다.”라고 밝혔다⁴⁴⁾.

이에 따르면 계약체결 및 채무 변제 비용을 이자 총액에 포함해도 「출자법」상 처벌의 기준이 되는 최고이자율이 이식제한법도 훨씬 높은 109.5%이므로 그다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약정의 민

고리가 되지만 전당포 대출이 보통 단기 소액인 점과 담보물 감정, 보관 절차, 도난 방지, 도난품 수사 협력 등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월 9%의 상한 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식제한법”은 일반법으로 전당포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長崎地裁 平成21年(2009年) 4月 14日 判決). 출처: 質屋 - Wikipedia, 2023년 5월 10일 검색.

42) 日本 最古裁判所 決定 1982年 12月 21日, 刑事判例集 36卷 12号, 1,037頁.

43) 당시 출자법상 금리상한은 연 109.5%로 월리(月利)로 환산하면 9%, 하루 이자가 0.3%에 달한다.

44) 中川武隆(1986), 「判解」, 『最高裁判所判例解説 刑事篇昭和 57 年度』, 法曹会. 368面; 金融取引の多様化を巡る法律問題研究会(2017), 8面에서 재인용.

사상 효력이 문제일 뿐 처벌받지 않는 폭넓은 ‘회색 지대(Gray Zone)’가 존재하여 출자법상 비용을 이자 총액에 포함해도 대금업자가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대금업자가 이른바 ‘특례금리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간주이자 범주를 무한히 확장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1982년 결정이 내려진 직후 학계에서는 간주이자 개념에 대한 이원적 해석론이 대세였다.⁴⁵⁾ 최고재판소 결정처럼 이자제한법과 출자법의 간주이자 범주에 대한 기준을 달리했다. 출자법상 ‘간주이자’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넓게 해석했다. 비용의 실질을 가졌지만, 이자로 간주해도 계약체결 비용 등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⁴⁶⁾ 반면에 이식제한법상 ‘간주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적 의미의 이자’로 제한된다고 보았다⁴⁷⁾.

하지만, 1983년 「출자법」 개정되면서 ‘비용의 실질’을 갖는 계약체결 또는 채무 변제 비용 및 수수료 등이 ‘간주이자’에서 명문으로 제외되었다.⁴⁸⁾ 아울러 「출자법」상 최고이자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되면서 ‘이원적

45) 이식제한법과 출자법에 대한 이원적 해석론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융자한도(Commitment Line)계약이나 신디케이트론(Cyndicate Loan)이 주로 은행이 영위하는 업무에서 발생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대금업법은 은행이 영위하는 대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6) 1954년 「출자법」 제정 당시 형사 처분 금리는 109.5%였다. 1983년에는 73%, 86년에는 54.75%, 91년에는 40.004%. 2000년에는 29.2%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었다.

47) 金融法委員会(1998), 「『コミットメント・フィーに関する論点整理』の概要」, 『金融法務事情』 1534号, 27面; 金融法務研究会(2002), 「金融取引における『利息』概念についての検討」, 金融調査研究会·金融法務研究会事務, 8面~9面은 구(舊) 이식제한법에서 조사비용 및 계약체결 비용에 대해 “시간과 번거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관념상 비정상적인 고액에 달하지 않는 한 유효”라고 판시한 일본 대심원(大審院) 판례(1936년 10월 23일, 民集 15卷 21号 1,843面)와 진정한 수수료는 이자제한법의 시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던가와시마 타케요시(川島武宜, 1936)를 인용하여 현행 이식제한법은 구법을 폐지하고 신법으로 계승한 것이지만, ‘간주이자’에 대해 규정한 현행 3조가 구법의 입장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하면서 현행법에서도 1936년 판결의 견해와 일치하여 이자제한법은 실질적인 이자를 규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6년 개정에 따라 영리 목적의 소비대차에 관한 출자법의 상한 이율 인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러한 견해가 “유효했다”로 평가된다. 佐藤正謙(2015), 「利息とそうでないもの—アレンジメントフィーを素材として—」, 『金融法務事情』 2023号, 12~13面. 金融法委員会(2009) 15面, 金融法委員会(2011), 81 面도 같은 취지. 金融取引の多様化を巡る法律問題研究会(2017), 8面에서 재인용.

48) 「출자법(出資法)」 제5조의4 제4항 (이자 및 보증료의 계산방법) : 전(前) 삼조(三條)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금전대부를 실시하는 자가 그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금전은 다음에

해석론'의 경제적, 법리적 전제가 크게 변했다. 예컨대, 1982년에는 출자법의 최고금리가 영리 목적의 소비대차에 대해서도 연 109.5%였으며, 계약체결 비용 등을 '간주이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는 영리 목적의 소비대차에 관한 이자율 상한이 연리 20%로 이식제한법과 같아졌고 최고재판소 판결 후에 1983년 「출자법」에도 이식제한법과 마찬가지로 '간주이자' 적용 예외 규정이 생겼다.⁴⁹⁾

이러한 환경 변화를 근거로 이식제한법의 “소비대차에 관한”(제3조)이라는 문구와 출자법의 “대부와 관련한”(제5조의4 제4항)이라는 문구를 입법 취지에 맞게 재해석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금전의 성질에 대해 개별적으로 재검토하자는 견해가 대다수다. 왜냐하면 「출자법」과 「이식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이 일원화되었고, 간주이자에 관한 출자법상 예외 규정이 마련되었음에도 실질적인 의미의 이자가 아닌 수수료 등을 계속해서 이자로 간주한다면 더 이상 이를 법정 최고이자율 내에서 상쇄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자법상 '간주이자'의 범위를 이식제한법과 마찬가지로 '원본 사용의 대가'로서의 '실질적인 의미의 이자'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⁵⁰⁾

해당하는 금전을 제외하고 사례금, 수수료, 조사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자로 간주한다. 금전대부에 대한 지불을 수령하거나 요구하는 자가 그 수령 또는 요구와 관련되어 받은 원금 이외의 비용도 동일하다.

1. 계약 체결 또는 채무 변제 비용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
 - 가. 공조공과(공과금) 지불에 충당되는 비용
 - 나. 강제집행 비용,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비용, 기타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그 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다. 상대방이 대부와 관련하여 금전의 수령 또는 변제를 위해 이용하는 현금자동지급기나 그 밖의 기계의 이용료(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로 한다)
2. 금전의 대부 및 변제에 이용하기 위해서 교부된 카드의 재발급과 관련된 수수료, 그 밖의 대부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대부를 실시하는 자가 처리하는 사무비용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용

49) 金融法委員會(2009) 17面; 金融法委員會(2011) 83面, 佐藤(2015) 16面.

50) 이밖에 금융청 및 법무성은 2007년 이자제한법 시행령 등의 개정 시에 실시한 의견 청취 결과 출자법상 “금전을 대부하는 자가 그 대부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금전” 및 이자제한법상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수취하는 원본 이외의 금전”의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金融庁·法務省, 「利息制限法施行令(案)」及び「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案)」に関する 大南意見 聴取 結果 等」に対する 「意見 概要 및 意見에 對する 金融廳·法務省 判斷」(2007년

나) 특정용자한도법에 따른 금리상한 특례

일본에서는 1999년 약정 대출로 인한 수수료(commitment fee)에 대해 금리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정용자 한도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용자한도법’)이 제정되었다. 약정수수는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사이에서 일정 기간 대출 한도(commitment line)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고객의 청구가 있으면 대출을 실행할 것을 약속(commitment)하고 그 대출 한도를 설정·유지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를 말한다.⁵¹⁾ 약정수수가 이자제한법 또는 출자법에서 말하는 ‘간주이자’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 제정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지만⁵²⁾ 특정 용자 한도 계약⁵³⁾의 수수료에 대해 이자제한법 및 출자법상 ‘간주이자’ 규정의 적용이 입법으로 제외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약정수수료’와 같은 기왕의 논란은 신디케이트론에서 중개 수수료(arrangement fee)⁵⁴⁾나 대리인 수수료(agent fee)⁵⁵⁾에 대한 ‘간주이자규정’의 적용 유무와 관련하여서도 존재한다. 이를 포함하여 대출 실행 전에 수취하는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 규제

11월 2일 公表) No. 2.

51) 金融法委員会(2002), 2~3 面.

52) 특정용자한도법 제정 이전의 논의에 대해서는 金融法委員会(1998) 참조.

53) ‘특정 용자 한도 계약’이란 일정기간 및 용자의 한도금액 내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당사자의 한쪽을 채무자로 하여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에게 부여하고 당사자 일방이 이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의사표시에 따라 채무자가 되는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동법 2조 1항 각호에 열거된 대규모 회사에 해당해야 하는데, 자본금 3억엔 이상의 회사, 순자산 10억 엔 이상의 회사, 유가증권보고서 제출회사, 상호회사 등을 지칭한다. 특정용자한도법 2조 1항

54) 신디케이트론에서 중개업무(arrangement)란 자금 수요가 있는 조달기업 또는 프로젝트(투자안건)의 존재를 전제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다양한 거래 및 시스템을 통해 조달기업에 대한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여신으로 연계시키는 업무 또는 대상 자산 및 프로젝트 자체의 신용 능력이나 수익력을 분석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디케이트론 중개 업무는 대출 그 자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업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수하는 경우에 이자상한 규제의 입법 취지가 잠탈될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55) 金融法委員会(2009) 19~20面. 하지만 대리인 업무 수수료는 “대출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무 수수료임은 명확하나 사무수수료도 통상 이자로 간주되는 항목 중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金融法委員会[2002] 36面.

와의 관계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해석론이 실무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금융거래 당사자가 금리상한 규제의 잠탈을 의도하지 않고 수수한 금전이 문언상으로는 최고이자율 규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서 수수료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트랜잭션 거래'와 같은 새로운 금융거래의 개발이나 도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3. 싱가포르의 간주이자 규제

싱가포르 대금업법(Moneylender Act)⁵⁶⁾은 동 법률은 강한 행정제재를 특색으로 한다.⁵⁷⁾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 사업자가 무담보 대금업을 하려면 '과산 및 공인수탁청'⁵⁸⁾ 으로부터 등록이 아닌 '인가'를 받아야 한다(MA Sec. 2). 하지만 우리 대부업법과 달리 무담보 신용대금업만을 규제한다. 또한 대금업자는 월 4%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MA Sec. 23(5)). 이를 연이율로 단순 환산하면 48%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서는 싱가포르가 일본처럼 연 20% 미만의 법정금리 상한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로 예시됐다. 그러나 이는 싱가포르 대금업법의 규제 대상과 2015년 대금업법 개정 내용을 몰각한 것이다.⁵⁹⁾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개별 거래의 최고 이자율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우리처럼 거래비용을 포괄적으로 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컨대, 법원이 인정하는 비용과 60 싱가포르 달러 이내

56) Moneylenders Ordinance of 11th September 1959(Base version), Amended by 1 November 2007. 출처: <http://statutes.agc.gov.sg>

57) 윤형호(2013), "서울시 대부업체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30-31면.

58) Insolvency & Public Trustee's Office of Singapore(<http://app.ipto.gov.sg>)

59) 싱가포르에서는 2012년 이전에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대출은 18%의 명목이자율로 대금업자의 최고금리를 제한했다. 여기에는 취급수수료, 대출연장 수수료 등을 이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보다 높았다. 그런데 2012년 6월 이후 명목이자율에서 실질이자율을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였고, 그동안 이자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취급수수료, 대출연장 수수료가 이자에 포함되었다. 그 결과 2008년 2,008개에서 2012년 말 209개로 급감하여 4년 사이에 90% 가까이 폐업하였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2015년 10월부터 최고이자율 규제를 완화하였다. 윤형호(2013), 앞의 책, 서울연구원, 34면.

의 지연이자, 대출 원금의 10%를 넘지 않는 취급수수료는 이자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자, 연체이자, 선불 수수료 및 연체 수수료의 총액이 대출 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⁶⁰⁾ 이는 개별대출 거래에서 이자를 포함한 금융비용이 원본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수취이자 총액의 한계를 정한 ‘일본일리(一本一利)의 원칙’과 부합한다.

4. 소결

앞선 검토를 종합하면, 우리와 같이 대출의 종류나 전당포업이나 Transaction Banking 등 영업 종류에 상관없이 보편적이면서 포괄적인 법정 최고이자율 규제를 시행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또한 일본의 간주이자 규제와 비교하면 제한 없이 확장할 수 있는 우리 간주이자 규제는 과잉 입법이 의심될 만큼 경직됐다.

일본 출자법은 1983년 개정으로 이식제한법과 같은 간주이자 적용 예외 기준을 도입했다. 또한 동산담보 대출을 취급하는 전당포업자는 「전당포영업법」에서, 「특정용자한도법」에서는 일정 규모의 기업 대출에 관해서는 출자법 및 이식제한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 밖에 해석론 차원에서 간주이자 개념을 입법 취지에 맞게 재해석하려는 주장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간주이자 개념 재해석론의 제기 배경에는 출자법과 이자제한법의 적용 예외를 정한 「특정용자한도법」이 제정된 상황과 국제금융환경의 변화로 일본 금융회사도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경제 현실이 놓여 있다. 그런데 간주이자 규정이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과 금융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의 지속적 인하로 인해 이자총액에 포함되는 비용과 수수료의 비중이 비례적으로 높아졌다. 그런데도 우리 대부업법은 일본 출자법 제5조의 4 제4항 제1호 가항에 해당하는

60) “What are the fees that the moneylender can charge?”. 출처: 싱가포르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mlaw.gov.sg/content/rom/en/information-for-borrowers/guide-to-borrowing-from-licensed-moneylenders-english.html>

공과금 정도를 이자 간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므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원본 사용의 대가’로서 ‘실질적인 의미의 이자’만을 이자 총액에 포함하도록 간주이자 기준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최고이자율을 위반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단리 환산 규정은 과잉 규제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처럼 ‘실질적인 거래비용’을 기준으로 간주이자 범위를 소극적으로 제한하면 같은 딜레마를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Transaction Banking과 같은 새로운 영업 행태가 출현했을 때마다 「특정용자한도법」이나 「CMS법」처럼 최고이자율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계속 만들어야 하는 악순환을 고려해야 한다.

강물은 흐르고 바닷물이 요동쳐야 플랑크톤이 풍성해지듯 경기는 순환하고 물가와 금리는 변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생태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매번 특별법을 만들어 상황에 대처하면 늦을 수 있다. 차라리 간주이자 규정을 삭제하고 최고이자율을 규제하는 그물을 입법 목적에 맞게 새로 짜는 것이 생태계 발전과 사회적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전비 조달을 위해 불환지폐를 대량 발행으로 금리가 폭등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일본의 간주이자 입법례 보다 일본일리(一本一利)의 원칙을 관찰하는 선에서 이자의 총량 규제에 방점을 두었던 대한제국의 이식규례가 바람직한 모범일 수 있다.

IV. 맺음말

선조 11년 8월, 임금이 거동(舉動)할 때의 일이었다. 의장 행렬에 소년이 끼어 있어서 임금이 처음에는 구경꾼으로 여겼는데 다시 보니 군졸이었다. 임금이 측은히 여기고 나이가 차지 않은 군졸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일렀다. 이에 병조 판서가 군졸들을 점검하여 해당자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원하는 자가 적었다.

이에 대해 사관 율곡 이이는 “임금의 마음이 착하지만, 군정(軍政)의 폐단을 개혁하는 정치로 이어가지 못하므로 애석하다.” 하였

다.⁶¹⁾ 율곡의 탄식은 어린아이가 군졸로 오는 일을 막으려면 묵은 군적을 정리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했지만, 정작 임금이 그 일에는 관심과 의지가 없었음을 가리킨다. 임금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뜻이 있다면 마땅히 인구 변동을 조사하고, 고을의 크기와 재력을 살피어 징집 인원과 바쳐야 할 군포(軍布) 숫자를 조정해야 했다. 하지만 지방 관리는 일이 번다하고 비용이 적지 않다고 하여 꺼리고 조정(朝廷)과 임금이 이를 용인하니, 어린 병사가 고향에 돌아가도 또 다른 부역에 동원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2018년 대부업법상의 최고금리가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인 연리 20%와 같은 수준으로 일원화되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은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겠다는 대통령의 공약⁶²⁾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소년이 군졸 노릇을 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면 변화하는 군현의 인구 실태를 점검해야 했듯이 ‘최고이자율 일원화’를 왜곡하는 ‘간주이자’나 ‘단리환산’ 규제와 이중 삼중의 최고이자율 규제 장치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됐어야 했다. 아울러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최고이자율 일원화 취지와 달리 사금융시장이 커지는 규제의 역설이 성립하는 원인과 배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⁶³⁾

무등록 사금융업자에 대한 제재와 단속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심의하던 2020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⁶⁴⁾에서 우리는 율곡의 걱정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회의록에는 현행 최고이자율 규제의 문제, 대출의 원가구조와 최고이자율 규제의 괴리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가 여야를 불문하고 상당했다. 이를 보면 우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딜레마는 최고이자율 인하나 일원화가 아니었다. 금융감독원의 답변처럼 평균 약정이율이 연리(年利) 43%에 이르는 사금융시장이 축소되지 않는 현실이었다.

61) 李珥(오향녕 역), 「율곡의 경연일기」-난세에 읽는 정치학-, 너머북스, 447면~449면.

62) 국정기획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 07), 48면

63) 김대규, ‘새로운 금융영업 출현 저해하는 간주이자 규제’, 한국금융신문(2020.2.10.)

64) 21대 국회 회의록, 제386회(임시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1.4.26.), 국회사무처

(논문투고일: 2023.5.26., 심사개시일: 2023.6.9., 게재확정일: 2023.6.26.)



김대규

간주이자,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일원화, 규제의 역설, 일본 출자법, 일본 이식제한법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상용,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09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6
 김형배·김규환·김명숙,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3
 노종천, 「채권총론」, 동방문화사, 2017
 백경일, 「채권총론」, 고래시대, 2015
 송덕수, 「채권총론」, 박영사, 2015
 이덕환, 「채권총론」, 율곡미디어, 2015
 李珮(오항녕 옮김), 「율곡의 경연일기-난세에 읽는 정치학-」, 너머북스, 2016
 조승현·고영남,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2. 연구논문

- 김대규, 대부이자의 상한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제15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김대규, 미국의 단기소액대부에 대한 규제와 한계-페이데이론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7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08
 김대정, '현행법상 이자제한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9권 제2호, 중앙법학회, 2007
 김대회, '중도상환수수료의 현황과 개선 논의', 「이슈와 논점」 제666호 (2013.6.7.), 국회입법조사처
 김상봉,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발표자료」, 한국대부금융협회, 2017
 서정호, '트랜잭션 बैं킹의 현황과 확대방안', 「주간 금융브리프」 제19권 49호, 한국 금융연구원
 윤형호, "서울시 대부업체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2013

- 이수진,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8.
- 정찬우·이건범·강경훈, 「대부업 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5
- 조지만, “구한말 이자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22권 3호(통권 70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 川島武宜, 「手数料控除と消費貸借」, 『判例民事法 昭和 11 年度』, 民法法判例研究会, 1936
- 金融法委員会, 「『コミットメント・フィーに関する論点整理』の概要」, 『金融法務事情』1534号, 1998
- 金融法委員会, 「シンジケートローン取引におけるアレンジメントフィー/エージェントフィーと上限金利規制」, 『金融法務事情』1877号, 2009
- 金融法委員会, 「期限前弁済手数料及びアップフロントフィーと利息制限法及び出資法に関する中間論点整理」, 『金融法務事情』1913号, 2011
- 金融法務研究会, 「金融取引における『利息』概念についての検討」, 金融調査研究会·金融法務研究会事務, 2002
- 吉田 昂, 「利息制限法解説」, 『法曹時報』6卷 6号, 1954
- 佐藤正謙, 「利息とそうでないもの—アレンジメントフィーを素材として—」, 『金融法務事情』2023号, 2015
- 中川武隆, 「判解」, 『最高裁判所判例解説 刑事篇昭和 57 年度』, 法曹会, 1986

3. 기타 자료 및 인터넷자원

- 국정기획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 07)
- 국회회의록, 제386회(임시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4.26), 국회사무처
- 김대규, 금리상한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대부금융협회, 2016
- 김대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교법적 관점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 2019
- 김대규, ‘새로운 금융영업 출현 저해하는 간주이자규제’(2020.2.10.), 한

국금융신문

금융위원회,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2019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 법률」

(법률 제6706호, 2002.8.26, 제정, 시행 2002.10.27), 제정·개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이자제한법(법률 제8322호, 2007.3.29.

제정, 시행 2007.6.30)

법제처 법령해석 06-0017(2016.3.24), 대부업정책협의회(201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제윤경 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제2004102호), 2016.12.5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정재호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13321), 2018.4.30. 발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찬열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000149호).

Moneylenders Act & Rule of Singapore : Singapore Statutes Online

<https://sso.agc.gov.sg/SL/MA2008-S72-2009?DocDate=20181116>, 2023년 3월 10일 검색).

日本國 金融廳, (<https://www.fsa.go.jp/menkyo/menkyo.html>)

日本國 金融庁·法務省, 「利息制限法施行令(案)」及び「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案)」に関する意見聴取結果等」に対する「意見概要及び意見에 對する金融廳·法務省의 判斷」(2007년 11월 2일 公表)

日本國 最高裁判所 決定 1982年 12月 21日, 刑事 判例集 36 券 12号

金融取引の多様化を巡る法律問題研究会, “金融取引の適用範圍のあり方”,

「金融研究」, 日本銀行金融研究所(2017.04).

<https://www.imes.boj.or.jp/research/papers/japanese/kk36-2-1.pdf>

「出資의 受入·預金 及び 金利 等の 取締에 關する 法律」(1984.6.23. 法律 第195号)

特定融資枠契約に関する法律(平成 十一年 法律 第四号)

Abstract

A Comparative Legal Review on Deemed Interest Regulation

Kim, Dae Kyu*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deemed interest regulation stipulated in Article 8 (2)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Credit Business Act as follows)」 . In Article 8, Paragraph 2 of the Credit Business Act, the following transaction costs are deemed as interest. “In determining the interest rate prescribed in paragraph (1), all payments made to a credit service provider in connection with a loan, in whatsoever name it is referred to, such as a recompense, a rebate, a fee, a deductible amount, overdue interests, or a substitute payment, shall be deemed interest: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to expens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those incidental to the conclusion of the relevant transaction and repayment.”

The Credit Business Act deem “everything received by a lender regardless of its name” as interest. This comprehensive definition of interest allows the category of interest to be expanded indefinitely regardless of the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interest. As a result, arbitrary supervision and judicial judgment on whether the highest interest rate is violated are possible. Logically it makes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under the constitution. Emerging financial operations based on fees, such as 'P2P loans' and 'Transaction Banking', are also bound to be

* Seoul Digital University Prof. Dr. iur.

restricted by the highest interest rate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 the conceptual problems implied by 'deemed interest', not interest in a unique sense under the Credit Business Act. Subsequently, other countries that implement the legal interest rate cap under the Credit Business Act would be examined how to set the scope of their application by comparing them with the deemed interest regulations under the Korean Credit Business Act. Finally, it would be presented ideas to solve problems arising from the current deemed interest regulations.



▶ **Kim, Dae Kyu**

Deemed Interest, Credit Business Act, The Interest Limitation Act, Dual Regulation System of Deemed Interest, Unification of Legal Maximum Interest Rate Regulation, Paradox of regulation, Transaction Banking